

'20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On-Line 사업설명회

2020. 7. 1.(수), 14:30~16:00

<http://vc.on-nara.go.kr>



CONTENTS

- 1 사업 개요
- 2 20년 사업공모 계획
- 3 평가 방법 및 기준
- 4 사업 관리
- 5 유의 사항 및 기타



1. 사업 개요

I 추진 배경

» 정부는『스마트시티 추진전략』수립('18.1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 중

▶ 국가시범도시 :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 국가 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서비스가 구현되는 테스트베드**로 그 간 **시도되지 않은**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

▶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긴 서비스를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 및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년 부터 규제샌드박스 사업 추진 중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일 : '20.2.27.)

1. 사업 개요

I 사업 목적

» 국가시범도시 성공적 구축을 위해 그 동안 **규제**로 인해 적용할 수 없었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 · 서비스 실증 및 규제해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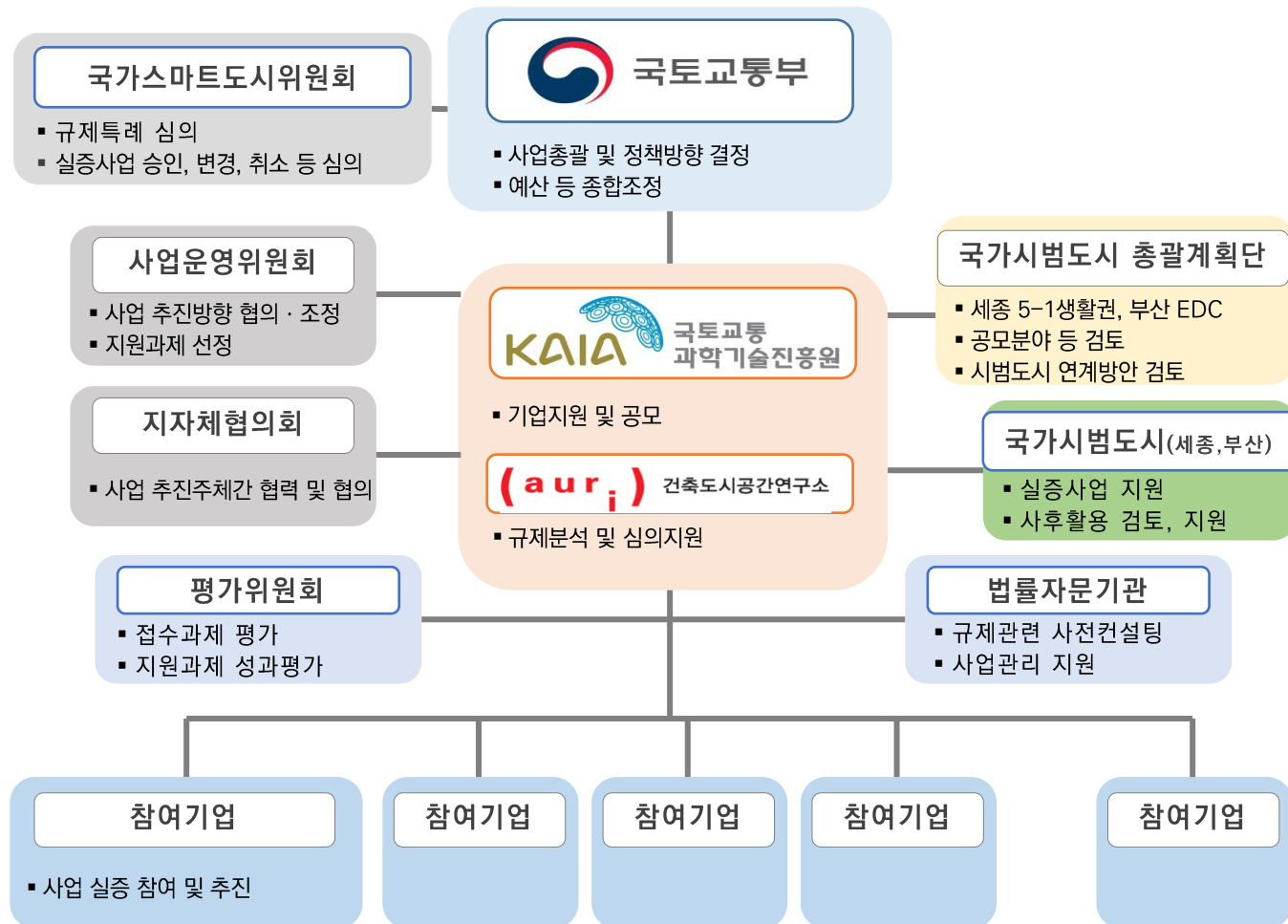
- ▶ (기간·예산) '19년~'23년, 연간 40억원 내외 지원
- ▶ (지원대상)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I 추진 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1. 사업 개요

I 사업추진체계



2. 20년 사업공모 계획

I 공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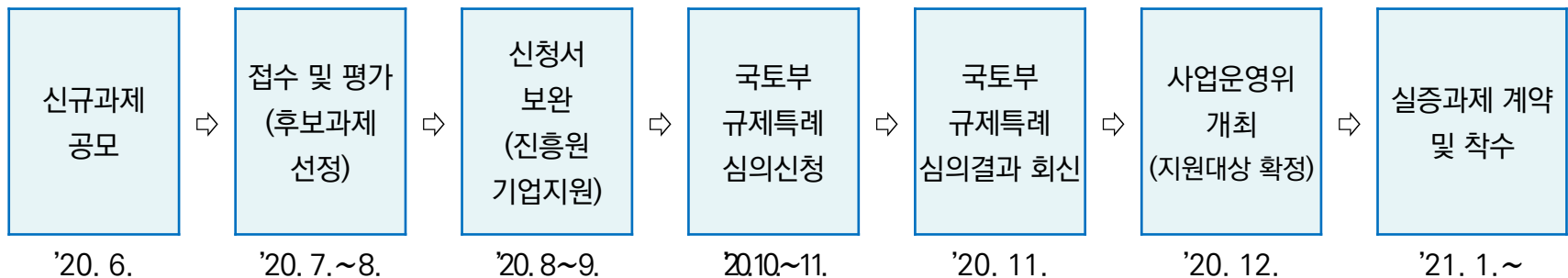
사업명	2020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기간	'20. 6. 25.(목)~7. 26.(일), 31일간
접수기간	'20. 7. 27.(월)~7. 28.(화), 15:00 까지, 방문접수만 가능
지원내용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내 적용 가능한 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규제 개선, 사업화 등을 위한 “실증사업비”를 지원
지원과제수	국가시범도시별 4개 내외(지정공모 2개, 자유공모 2개)
지원예산	과제별 5억원 이내 지원(정부지원금 기준)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계상)으로 구성

2. 20년 사업공모 계획

I 추진 절차

» 접수과제 중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후보과제’를 선정 후 사업모델 명확화, 지자체 협의 등 사업계획서 보완단계를 거쳐 국토부 규제특례 심의 신청

» 규제특례 심의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결과, 규제특례 심의결과, 지자체 의견, 정부예산지원 한도 등을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과제 및 실증사업비 확정



※ 추진 일정은 심의 등 행정 처리기간 소요에 따라 변동 가능

2. 20년 사업공모 계획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고		'20. 6.	• 사업공고	진흥원
신청서류 접수		'20. 7.	• 신청서류 접수 - 공모신청서, 실증사업계획서 등	신청기관→진흥원
규제특례 심의신청 후보 과제 선정	사전검토	'20. 8.	• 진흥원 과제담당자, 법률컨설팅 기관 사전검토 - 신청서류 적합성, 규제특례 적용대상여부 등	진흥원
	1차평가	'20. 8.	• 서류평가 실시, 최종 지원대상의 3배수 내외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2차평가	'20. 8.	• 발표평가 실시, 최종 지원대상의 2배수 내외를 후보과제로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20. 8.	• 규제특례 심의 신청후보 확정	사업운영위원회
후보과제 선정결과 알림		'20. 8.	• 후보과제 선정여부 신청기관에 알림	진흥원↔신청기관
신청서 보완		'20. 8.~9.	• 사업모델 및 규제특례 내용 명확화, 지자체 협의, 시민의견 수렴 등	진흥원, 신청기관
국토부 규제특례 심의신청		'20. 10.	• 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특례 심의 신청	신청기관
국토부 규제특례 심의 결과회신		'20. 11.	• 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특례 심의 결과 회신	국토부→신청기관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20. 12.	• '20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지원대상 확정	사업운영위원회
계약 체결		'21. 1.	• 사업계획서 보완 및 계약체결	진흥원↔선정기관
사업 시행 및 관리		'21. 1.~12.	• 사업 시행	진흥원

2. 20년 사업공모 계획

I 공모 대상

» 국내 민간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 ▶ 기업을 대표기관으로 하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단, 개인사업자, 지자체 는 참여불가)
- ▶ 대표기관을 포함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 수는 **최대 4개 이내**로 제한
- ▶ 실증대상 **지역 소재기업**이 응모할 경우에는 **가점** 부여

〈 지원제외 대상 〉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 **부채비율이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및 사업주**
※ 과제신청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 청산 시 지원가능
- ✓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0년 사업공모 계획

I 공모 방식

» 서비스를 특정한 “지정공모” 방식과 서비스를 특정하지 않은 “자유공모” 추진

▶ (지정공모) 시범도시별 4개 공모서비스를 대상으로 관련 기술 보유기업 등에서 제안

- (세종)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도시(공원등)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 (부산) 건강토큰 서비스,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에너지 자립도시, 로봇서비스

▶ (자유공모) 시범도시별 도입서비스를 대상으로 관련 기술 보유기업 등에서 자유롭게 제안

- (세종) 스마트도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20개
- (부산)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원스탑 의료서비스 등 19개

✓ 동일한 서비스로 부산과 세종에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

✓ 지역별로 서비스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중복 지원 가능

2. 20년 사업공모 계획

I 공모 분야 (지정공모)

▶ 세종시 4개 서비스

분야	서비스	필요성	주요내용
에너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기술 도입을 위해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을 대상 에너지 거래 서비스 실증 및 규제해소 필요	·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물에서 소비하고 남는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실증
생활 (물류)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 기존 인력기반 Last-mile 배송방식 개선 등 관련 규제해소 필요 · 드론 등 배송수단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 필요	· 소비자가 온라인/오프라인 개별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을 일괄 통합배송하는 과정에 도입할 수 있는 혁신기술 또는 기존 배송방식의 개선 등과 관련한 실증
헬스 케어	AI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 응급상황시 응급구조사가 AI기반 진단정보를 활용하고,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응급구조사-의사간 원격의료 허용 등 관련 규제해소 필요	· 응급환자의 빠른 응급진단/처치를 위해 AI기반 응급의료 시스템을 활용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실증
안전	도시(공원등)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 도시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예방,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세종시 드론비행 관련 규제해소 필요	· 도시내 범죄, 사고,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시 상황정보 수집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등을 위한 감시용 드론 서비스 실증

2. 20년 사업공모 계획

I 공모 분야 (지정공모)

▶ 부산시 4개 서비스

분야	서비스	필요성	주요내용
헬스케어	건강토큰 서비스	· 부산 에코델타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블록체인 기반 건강토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원격의료 관련 규제해소 필요	· 원격진료 서비스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건강토큰을 지급하고, 지급된 토큰은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서비스 또는 헬스케어 제품 구입시 활용하는 서비스 실증
	AI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 응급상황시 응급구조사가 AI기반 진단정보를 활용하고,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응급구조사-의사간 원격의료 허용 등 관련 규제해소 필요	· 응급환자의 빠른 응급진단/처치를 위해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을 활용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실증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자립도시	· 산업부 R&D로 관련기술개발은 완료한 상황이며, 건축물에 적용시 단열기준 등의 규제완화 필요	·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용 융복합 제품(BIPV* 등) 적용 모델 실증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로봇	로봇서비스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내 패트롤 로봇, 무인택배로봇 도입을 위한 도로법상 로봇 보도이동 등 관련 규제해소 필요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내 경비 및 순찰을 위한 패트롤 로봇, 무인택배 보관소 등에서 각 세대로 배송하는 무인택배 로봇 서비스 실증

2. 20년 사업공모 계획

I 공모 분야 (자유공모)

분야	도입 서비스명	세종	부산
교통 (3)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	○
	스마트 도로	○	○
	보행자 안전 서비스	○	○
헬스케어 (5)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
	건강토큰 서비스	○	-
	스마트헬스키퍼 서비스	○	-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	-
	클라우드기반 원스탑 의료서비스	○	○
교육 (4)	스마트 학습공간(온라인, 오프라인)	○	-
	학습체제(IB) 도입	○	-
	에듀테크 도입	○	○
	생애교육 서비스 제공	○	○
에너지 (3)	신재생에너지 공급	○	-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	○
	에너지 자립도시	○	-
환경 (3)	스마트정수장 운영	-	○
	Smart Water Management 도입	-	○
	친환경 음식물 자원화	○	-

분야	도입 서비스명	세종	부산
안전 (4)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	○
	도시물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	○
	화재 예방 및 진화지원 시스템	-	○
	도시(공원등)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	-
생활 (13)	365일 스마트 쇼핑 & 컬처	-	○
	스마트 홈	-	○
	City App	-	○
	스마트 생활 편의 서비스	-	○
	스마트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서비스	-	○
	공연자-관객 맞춤 연계 서비스	○	-
	가변형 공연 문화공간 구축	○	-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	-
	합강습지 및 자연보호구역 관찰/교육	○	-
	안개발생 예측 서비스	○	-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	-
	융복합 어린이놀이터 콘텐츠	○	-
	커뮤니티 증진형 스마트팜 서비스	○	-
로봇 (3)	로봇운영체계 및 통합플랫폼 구축	-	○
	로봇 친화도시 지원기반 구축	-	○
	공공 로봇 서비스	-	-
합 계		20개	19개

3. 평가 방법 및 기준

I 평가절차 및 방식

- » (평가절차) 접수과제는 진흥원에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1차평가(서류)** 및 **2차 평가(발표)**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 (사전검토) 진흥원은 신청 서류의 **적합성** 및 공모안내서와의 **부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
 - ▶ (1차평가) 지원대상의 **3배수 내외**를 2차평가 대상으로 선정
 - ▶ (2차평가)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고 지원대상의 **2배수 내외**를 후보과제로 선정
 - ▶ (사업운영위) 평가결과,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규제특례 심의 신청 후보과제 최종 확정**
 - ▶ (가점) 실증 대상 지역기업이 참여할 경우 1차평가 단계에서 +1점의 가점을 부여
- » (평가방식)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는 분리**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서비스별 경쟁상황, 접수과제 수 등에 따라 **평가단위 및 평가방식 수립 예정**

3. 평가 방법 및 기준

I 평가점수 산정 및 가점

» (평가점수 산정)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각각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한 **중위평균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확정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

» (가점) **지역기업** 참여시 **가점(과제별 +1점)** 부과, 가점은 1차평가 단계에만 적용

〈 지역기업 가점 인정 기준 〉

실증 대상지	사업장 주소지(본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 평가 방법 및 기준

I 평가 기준(1차평가)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사업추진 필요성	30	• 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특례 적용 필요성
기술의 우수성 및 연계성	20	• 적용 기술 및 서비스의 우수성, 혁신성 및 차별성 • 상위 스마트시티 계획 등과의 연계성
계획의 구체성	30	• 보유 기술 및 서비스 실증계획의 구체성 • 관련기관 협력방안, 민원 및 갈등해소방안의 적정성 •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화 및 파급효과	20	• 사업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국내외 확산 방안(상품화·비즈니스 모델 등) • 실증사업 추진 시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합 계	100 + 가점	• 지역기업이 참여할 경우 가점 +1점 부여

부합성 평가	평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실증사업계획서가 사업목적, 지원 대상, 범위 및 내용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 시 탈락 조치
--------	---

3. 평가 방법 및 기준

I 평가 기준(2차평가)

평가 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사업의 필요성 (10점)	5	• 실증사업의 추진 필요성
	5	• 상위 스마트시티 계획 등과의 연계성
적용기술 혁신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10	• 적용기술 · 서비스의 혁신성
	10	• 적용기술 · 서비스의 실현가능성
실증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40점)	10	• 규제특례 적용대상 및 개선방안의 적정성
	25	• 실증지역 및 실증사업 세부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관련기관 협력방안의 적정성
	5	• 사후 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사업수행역량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 (10점)	5	• 참여기관의 사업수행 역량의 적정성
	5	• 예산 투입계획의 적정성 • 실증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
피해예방 및 손해배상 방안 적정성 (10점)	10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 분석 등 사업의 안전성 • 발생 가능한 인적 · 물적 피해의 예방 및 배상방안의 적정성 • 실증사업으로 인한 예상 민원 및 갈등 해소방안의 적정성
기대효과 및 확산 방안 적정성 (10점)	10	•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 기대효과 • 국내외 홍보 및 확산방안(상품화 · 비즈니스 모델 등)
합 계	100	

4. 사업 관리

I 계약 안내

- » 지원 대상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신청기관은 진흥원이 제시하는 계약서의 내용으로 사업 계약을 체결 (계약서 양식은 추후 제공)
- » 계약체결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 보증 또는 보증금액은 전체금액(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4. 사업 관리

I 사업비 정산

- » 사업수행자는 사업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 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수감하여야 함
 - ▶ 정산 범위는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 내 정산 수수료의 계상이 가능함
- » 사업수행자는 불인정 금액, 반납 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진흥원에 송부
- » 사업수행자는 정산 후 반납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반납금액을 진흥원 지정 계좌로 송금하여야 함

4. 사업 관리

I 성과물의 소유권 및 기타사항

- » 사업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참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 다만 성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소유**를 **제한**할 수 있음
- » 사업 참여기간 중 사업수행자가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 사업수행자는 **사업성과의 공유, 홍보** 등을 위해 주무부처와 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에 발표, 부스 운영 참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5. 유의사항 및 기타

I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 응모분야, 서비스, 관련 규제사항, 지재권 확보여부, 관련 근거 등 **명확히 기재**
- » 사업수행자를 선정한 후 시범도시별로 수행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 예정
- » 신청기관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므로**,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기관으로 함께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 실증기간은 **최대 6년**까지 작성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1차년도**에 지원
 - ▶ 민간부담금은 국비가 지원되는 연차(1차년도)를 기준으로 최소 매칭비율에 맞게 산정

5. 유의사항 및 기타

I 기타 유의사항

- » 사업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신청기관과 관계자(대표자 포함)는 신용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부처 규제샌드박스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기타

I 제출서류 목록

번호	제출 서류	비고	번호	제출 서류	비고
1	신청 공문 (대표기관)	-	9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각 1부
2	공모신청서 원본 (직인 날인)	1부	10	사용인감계	각 1부
3	신청기업 소개서	각 1부	11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4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12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20부
5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1부	13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해당시)	각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14	공동수급협정서	1부
7	공모 서약서	각 1부	15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16	제출서류 파일 일체	USB

▶ **제출서류 서식**은 공고 첨부파일 “(붙임3) 제출서류 서식” 참조

5. 유의사항 및 기타

I 찾아오시는 길



▶ 주차는 **헤미리타운빌딩**에 하시고 주차증을 가져오시면 **주차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기술
창조적 국토공간을 구현하는 기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도시와 국토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국토교통의 신기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Q & A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기술
창조적 국토공간을 구현하는 기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도시와 국토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국토교통의 신기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